

『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며,
-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문화도시 조성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,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3조)
-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(안 제4조~제5조)
-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(안 제8조~제14조)
-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15조~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, 제15조, 제17조
「문화기본법」 제5조
- 예산조치 : 조례안 유인물 비용추계서 참조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<문화도시 관련 조례> 제정 여부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이며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상위법인 「문화기본법」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 제정 후 문화도시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정주여건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문화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